1. 부가가치세

1. 부가가치세의 개념

- ① 부가가치(Value Added)란?
 -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

② 부가가치세란.

- [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]에 부과하는 세금.
- 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매입세액
- 10% 단일세율 ⇒ 소득 X 10% = 납부세액
- 납세자 ≠ 담세자
 - ①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, 최종소비자가 부담
 - ②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사업자.
 - 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. 납부해야 함.

1. 부가가치세

2. 부가가치세의 특징

- 일반소비세
 - 소비자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소비세
 - 재화, 용역의 거래에 대한 세금
- ① 국세이며 간접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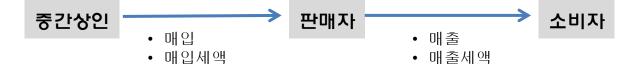
② 다단계거래세 • 재화나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유통단계마다 부과되는 거래세



1. 부가가치세

2. 부가가치세의 특징

④ 전단계 세액공제법



- 매출세액 매입세액 = 납부세액
- 매출세액 > 매입세액 > 납부세액
- 매출세액 < 매입세액 > 환급세액
- ⑤ 소비형부가가치세
- 과세대상 : 소비지출

1. 부가가치세

3.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

① 재화의 공급

② | 용역위 공급

③ 재화의 수입

• 재화: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

• 용역: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

4. 납세의무자

-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→ "사업자"
- 단, 국가·지방자치단체는 원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나,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를 가진다.

5. 과세기간

① **제 1기 (1/1 ~ 6/30)** • 예정신고기간 : 1/1 ~ 3/31, 납부기한 : 4/25

• 확정신고기간 : 4/1 ~ 6/30, 납부기한 : 7/25

② 제 2기 (7/1 ~ 12/31)

• 예정신고기간 : 7/1 ~ 9/30, 납부기한 : 10/25

• 확정신고기간: 10/1 ~ 12/31. 납부기한: 1/25

1. 부가가치세

4. 납세의무자

-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궁급하는 자 → "사업자"
- 단, 국가·지방자치단체는 원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나,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를 가진다.

과세사업자

- 사업자등록의무 0, 신고납부의무 0
 - ① 일반과세사업자
 - : 법인, 세금계산서로 거래
 - ② 간이과세사업자
 - : 직전연도 총공급대가가 4,,800만원 이하 세금계산서 교부 X → 간이영수증 교부

면세사업자

- 사업자등록의무 X, 신고 0, 납부의무 X
- ① 신고시,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
- ② 대리신고 의무 있음

1. 부가가치세

5. 납세지

-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.
- 사업장 = 납세지
- 사업장이란,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.

| 구 분 | 사업장의 범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광업 | 광업사무소 소재지 |
| 제조업 |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|
| 건설업, 운수업, 부동산매매업 | 법인 : 법인등기부상 소재지 / 개인 :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|
| 부동산 임대업 |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|
|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|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|
|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구시설관리공단 이 공급하는 사업 |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|
| 다단계판매원이 공급하는 사업 |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|
| 전기통신사업 |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|
|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|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|

1. 부가가치세

5. 납세지

- ① 사업장
 - 거래가 발생하는 장소, 판매행위가 발생하는 장소
 - 물건의 보관 X
 - 만약, 사업장이 없다면

사장의 주소지, 사장의 거소지, 법인: 법인소재지, 개인: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.







원칙: 사업장 X 단, 본사사무실 포함하면 사업장 0

1. 부가가치세

5. 납세지

② 주사업장총괄납부

• 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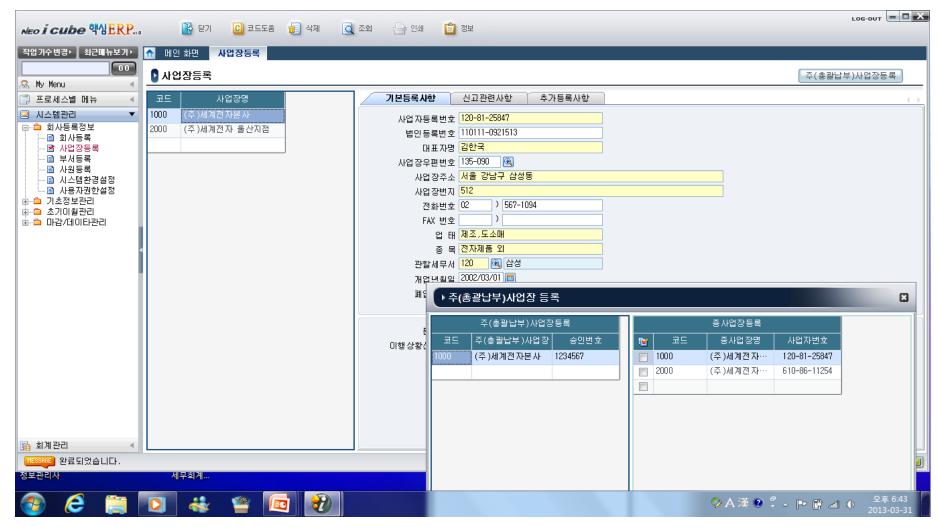
정부의 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을 지정하여

각 사업장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.

■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승인요청

③ 사업자단위 과세제도

-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,
- 사업자등록의 단일화 가능 → 세금계산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교부가능, 신고 납부 하나의 사업장에서 가능.
-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승인요청



1. 부가가치세

6. 사업자등록

- 부가가치세 제 5조 제 1항
 -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.
 - 신규 사업개시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 가능.(20일 전)
 -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신청 3일 이내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.

● 사업자 미등록 제재사항

- ① 미등록가산세(법인: 공급가액의 1%, 개인: 공급가액의 0.5%)
- ② 매입세액 불공제
- ③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벌금: 50만원
- ④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

1. 부가가치세

7.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① 재화의 공급, ② 용역의 공급, ③ 재화의 수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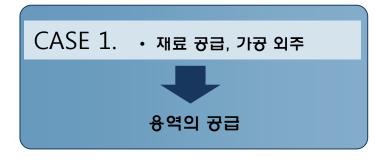
(1) 재화의 공급

- 재화의 궁급:계약상 또는 법률상의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.
- 가공계약, 교환거래, 현물출자, 경매 등 포함.



실질공급

• 가공계약 예





1. 부가가치세

(1) 재화의 공급

[간주공급]

■ 간주공급이란, 부가가치세법상 본래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, 과세공평과 조세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것.

① 자가공급

-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.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, 소비하는 경우 재화와 공급을 봄.
- 면세전용
- 비영업용 소형승용자 또는 그 유지.사용을 위한 재화
- 직매장반출

1. 부가가치세

- 직매장반출
 - ① **판매목적** : 공급으로 봄. > 세금계산서 교부0

(단,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이면 세금계산서 교부 X)

- ② **진열목적** : 자가공급 X > 세금계산서 교부X
- ② 개인적공급
- ③ 사업상 증여
- 단, 다음의 것은 간주공급에서 제외.
- ①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
- ② 무상으로 견본품을 공급하는 것
- ③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물을 배포하는 것
- ④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.
- 4 **폐업시 잔존재화** :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봄.

1. 부가가치세

(2) 용역의 공급

■ 용역의 궁급이란,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,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

① 용역공급의 범위

- 건설업: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
- 임가공용역: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하는 것.
- 산업. 상업. 과학상의 지식 등 정보제공

②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

- 용역의 무상공급 (cf) 재화의 무상공급
- 근로의 제공
- 용역의 자가공그ㅂ

1. 부가가치세

(3) 재화의 수입

-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이 완료된 물품을
-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
- "소비지국 과세원칙"에 의거하여,
- **사업자 유무에 관계없이** 모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.
- 과세표준 = [관세의 과세가액 + 개별소비세 + 주세 + 교통세 + 교육세 + 농어촌특별세]

1. 부가가치세

8. 거래시기

-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
- 재화가 인도되는 때
-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
-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
-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 :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.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

9. 거래장소

-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
 -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
 -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
-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
 -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.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
 - 국제운송인 경우,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

1. 부가가치세

10. 영세율과 면세

[1] 영세율

- 영세율이란,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0% 세율 적용
- 재화나 용역의 최종원가에 부가가치세를 전혀 포함시키지 않는 완전면세제도
 - ① 수출하는 재화
 -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
 - ③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
 - ④ 기타 법에서 정하는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

[2] 면세

- 면세란,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.
- 면세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한 공제받을 수 없음 → 불완전 면세제도
-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, 수도물, 연탄과 무연탄, 의료보건용역과 혈액, 교육용역, 여객 운송용역, 도서·신문·잡지, 우표 및 복권,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, 토지, 인적용역 등

1. 부가가치세

● 면세와 영세

| 구 분 | 면 세 | 영 세 율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개 념 | 일정한 재화·용역의 공급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| 일정한 재화·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(0)의세율을 적용 |
| 대 상 | 기초생필품, 조세정책 목적 등 | 수출하는 경우, 조세정책 목적 등 |
| 利利 |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역진성 완화 |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(시험단골) |
| 납세의무 |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없음 | 납세의무 있음 (시험빈출) |
| 납세자 협력의무 |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, 대리납부의무 | 부가가치법상 각종 권리·의무 있음 |
| 중간단계에서 적용시 |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 발생 | 환수효과 발생 |